

(參照)
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
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2항중 “사용량을 호수로”를 “사용량을 호수(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포함)로”로

하고, 같은조 제6항중 “이를 절상”을 “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(둘째자리 이하는 절사)”으로 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.

上水道行政의 政策方向

21世紀를 대비한 「水道整備基本計劃」 完成

↓

깨끗한 原水 확보	○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의체제 강화 ○ 원수수질감시 조사활동 강화
↓	
과학적인 淨水 처리	○ 여유 생산시설의 확보와 노후시설 정비 ○ 정수 수질의 과학적 관리·검사 ○ 고도정수처리 기술의 축적
↓	
供給체계의 선진화	○ 배수지시설 확충, 급수체계 안정화 • [정수장→배수지→수요가]로 전환 • 직결급수체계 구축
↓	
깨끗한 수도물 단수없이 공급	○ 노후관을 블록별 집중개량 ○ 수요가 급수시설 개량유도

↓

施設擴充과 先進化를 기하여 삶의 質을 向上

<행정계획 지표>

지 표	연 도			
	'90	'97	'98	2000
급 수 인 구(천명)	10,586	10,386	10,278	10,069
급 수 보 급 륜(%)	99.7	99.9	99.9	100
생산시설용량(만톤/일)	522	619	680	724
1일 최대생산량(만톤/일) 연간 1일 생산량이 최대	529	536	584	606
1일 평균생산량(만톤/일) 연간 총생산량 ÷ 365일	484	489	517	536
1인1일평균급수량(ℓ) 1일 평균생산량 ÷ 급수인구	457	471	503	533